

● 제319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879, 880, 881)

2023. 06. 1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 879,880,881

I. 결산안 개요

1. 제안경과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 출 일 : 2023. 05. 30.
- 다. 회 부 일 : 2023. 06. 01.

II. 결산현황

- 예산현액 : 5,913,642백만원
- 징수결정액 : 5,864,634백만원
- 실제수납액 : 5,857,094백만원
- 미 수 납 액 : 7,540백만원
- 결 손 처 분 : 0.2백만원
- 다음년도 이월액 : 해당없음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9.9%(전년도 99.8%)임.

<표> 2022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합 계	5,913,642	5,864,634	5,857,094	0.2	7,540	99.9%
일반회계	4,161,352	4,162,446	4,154,905	0.2	7,540	99.8%
200 세외수입	59,556	86,796	79,255	0.2	7,540	91.3%
210 경상적세외수입	13,511	12,415	12,126	0	289	97.7%
211 재산임대수입	609	213	171	0	42	80.1%
211-02 공유재산임대료	609	213	171	0	42	80.1%
212 사용료수입	77	424	424	0	0.3	99.9%
212-08 주차요금수입	67	63	63	0	0	100%
212-08 기타사용료	10	361	361	0	0.3	99.9%
213 수수료수입	35	45	45	0	0	100%
213-01 증지수입	35	45	45	0	0	100%
214 사업수입	12,290	11,049	10,870	0	179	98.4%
214-09 기타사업수입	12,290	11,049	10,870	0	179	98.4%
216 이자수입	500	684	616	0	67	90.1%
216-06 기타이자수입	500	684	616	0	67	90.1%
220 임시적세외수입	46,041	74,126	66,878	0.2	7,248	90.2%
221 재산매각수입	11	18	18	0	0	100%
221-04 불용품매각대금	11	18	18	0	0	100%
223 보조금반환수입	39,531	59,951	56,850	0	3,100	94.8%
223-01 시·도비반환금수입	33,716	52,964	50,961	0	2,003	96.2%
223-02 자체보조금반환수입	5,815	6,987	5,890	0	1,097	84.3%
224 기타수입	3,205	4,095	4,095	0	1	99.9%
224-07 그외수입	3,205	4,095	4,095	0	1	99.9%
225 지난연도수입	3,295	10,063	5,915	0.2	4,148	58.8%
225-01 지난연도수입	3,295	10,063	5,915	0.2	4,148	58.8%
230 지방행정제재·부담금	3	255	252	0	3	98.8%
233 변상금	3	255	252	0	3	98.8%
233-01 변상금	3	255	252	0	3	98.8%
300 지방교부세	390	390	390	0	0	100%
310 지방교부세	390	390	390	0	0	100%
311 지방교부세	390	390	390	0	0	100%
311-02 특별교부세	390	390	390	0	0	100%
500 보조금	4,082,638	4,056,704	4,056,704	0	0	100%
510 국고보조금등	4,082,638	4,056,704	4,056,704	0	0	100%
511 국고보조금등	4,082,638	4,056,704	4,056,704	0	0	100%
511-01 국고보조금	4,062,850	4,035,745	4,035,745	0	0	100%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339	9,171	9,171	0	0	100%
511-03 기금	10,449	11,788	11,788	0	0	1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768	18,556	18,556	0	0.06	99.9%
710 보전수입등	18,768	18,556	18,556	0	0.06	99.9%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712 전년도이월금	18,747	18,466	18,466	0	0	100%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8,747	18,466	18,466	0	0	100%
	713 용자금원금수입	21	23	23	0	0	100%
	713-01 민간용자금회수수입	21	23	23	0	0	100%
	715 보조금등 반환금	0	68	68	0	0.06	99.9%
	715-01 국고보조금등반환금	0	68	68	0	0.06	99.9%
의료급여특별회계		1,752,291	1,702,188	1,702,188	0	0	100%
200	세외수입	5,155	6,079	6,079	0	0	100%
	210 경상적세외수입	1,050	1,891	1,891	0	0	100%
	216 이자수입	1,050	1,891	1,891	0	0	1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50	1,891	1,891	0	0	100%
	220 임시적세외수입	2,855	2,974	2,974	0	0	100%
	224 기타수입	2,855	2,974	2,974	0	0	100%
	224-07 그외수입	2,855	2,974	2,974	0	0	100%
	230 지방행정특채·부담금	1,250	1,213	1,213	0	0	100%
	231 과징금	1,250	1,213	1,213	0	0	100%
	231-01 과징금	1,250	1,213	1,213	0	0	100%
500	보조금	868,001	842,480	842,480	0	0	100%
	510 국고보조금등	868,001	842,480	842,480	0	0	100%
	511 국고보조금등	868,001	842,480	842,480	0	0	100%
	511-01 국고보조금	868,001	842,480	842,480	0	0	1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79,134	853,629	853,629	0	0	100%
	710 보전수입등	11,149	11,149	11,149	0	0	100%
	711 잉여금	11,149	11,149	11,149	0	0	100%
	711-01 순세계잉여금	11,149	11,149	11,149	0	0	100%
	720 내부거래	867,986	842,480	842,480	0	0	100%
	721 전입금	867,986	842,480	842,480	0	0	1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867,986	842,480	842,480	0	0	100%

2. 세출결산

- 예산액 : 9,591,099 백만원
- 예산증감 : 20,131 백만원
- 예산현액 : 9,611,230 백만원
- 지출액 : 9,397,390 백만원
- 이월액 : 22,251 백만원

○ 보조금반납금 : 13,719백만원

○ 불용액 : 177,870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9%(전년도 1.0%)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

(단위 : 백만원)

불용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177,870	86,792	0	53,926	106	37,046	0

<표> 2022년도 복지정책실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B -C-D)	불용률
복지정책실 계	9,611,230	9,397,390	22,251	13,719	177,870	1.85%
일반회계 소계	7,856,988	7,711,568	22,251	13,719	109,450	1.4%
복지정책과	2,598,866	2,539,641	1,029	5,978	52,219	2.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1,410,221	1,376,620	1,029	5,978	26,594	1.9%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1,191,579	1,170,838	0	5,868	14,873	1.2%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52,541	49,890	0	0	2,652	5.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139,016	130,055	1,029	111	7,822	5.6%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27,085	25,837	0	0	1,248	4.6%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과)	272	225	0	0	47	17.3%
기본경비	272	225	0	0	47	17.3%
재무활동	1,188,374	1,162,796	0	0	25,578	2.2%
내부거래지출	1,185,793	1,160,288	0	0	25,505	2.2%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B -C-D)	불용률
	보전지출	2,580	2,508	0	0	72	2.8%
안심소득추진과		243	242	0	0	1	0.3%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미래사회복지 구현	237	236	0	0	1	0.4%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정립	237	236	0	0	1	0.4%
	행정운영경비(안심소득추진과)	6	6	0	0	0.0002	0.003%
	기본경비	6	6	0	0	0.0002	0.003%
안심돌봄복지과		295,976	292,729	0	0	3,246	1.1%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295,524	292,287	0	0	3,238	1.1%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3,519	3,499	0	0	20	0.6%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97,839	97,624	0	0	215	0.2%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194,166	191,163	0	0	3,002	1.5%
	약자동행 특별시 구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마련	407	398	0	0	9	2.2%
	약자동행 특별시 구현	407	398	0	0	9	2.2%
	행정운영경비(안심돌봄복지과)	45	45	0	0	0	0%
	기본경비	45	45	0	0	0	0%
어르신복지과		3,456,124	3,430,679	5,343	38	20,064	0.6%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3,455,885	3,430,443	5,343	38	20,061	0.6%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58,859	58,619	0	0	240	0.4%
	어르신 생활안정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	2,742,434	2,730,423	0	0	12,011	0.4%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293,836	282,615	5,343	32	5,846	2.0%
	어르신의 여가복지 지원	279,690	277,721	0	5	1,964	0.7%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81,066	81,065	0	1	0	0%
	행정운영경비(어르신복지과)	78	75	0	0	3	3.9%
	기본경비	78	75	0	0	3	3.9%
	재무활동	161	161	0	0	0	0.001%
	보전지출	161	161	0	0	0	0.001%
장애인복지정책과		206,867	183,769	9,774	2,419	10,905	5.3%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203,055	179,972	9,774	2,419	10,890	5.4%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B -C-D)	불용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99,991	177,128	9,774	2,418	10,670	5.3%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2,263	2,087	0	0	176	7.8%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802	757	0	0	44	5.5%
	행정운영경비(장애인복지정책과)	47	47	0	0	0	0.4%
	기본경비	47	47	0	0	0	0.4%
	재무활동	3,765	3,750	0	0	15	0.4%
	내부거래지출	63	48	0	0	15	23.6%
	보전지출	3,702	3,702	0	0	0	0.0001%
장애인자립지원과		1,087,687	1,062,281	6,105	5,284	14,017	1.3%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1,075,203	1,054,123	6,105	5,284	9,691	0.9%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23,980	23,950	0	0	30	0.1%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942,465	929,760	0	3,462	9,243	1.0%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92,814	92,514	0	25	275	0.3%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15,944	7,899	6,105	1,798	142	0.9%
	행정운영경비(장애인자립지원과)	43	42	0	0	0	0.6%
	기본경비	43	42	0	0	0	0.6%
	재무활동	12,442	8,116	0	0	4,326	34.8%
	내부거래지출	7,344	3,095	0	0	4,249	57.9%
	보전지출	5,097	5,021	0	0	76	1.5%
자활지원과		211,224	202,227	0	0.002	8,997	4.3%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64,812	56,163	0	0	8,649	13.3%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5,563	22,851	0	0	2,712	10.6%
	노숙인 자활지원	39,249	33,312	0	0	5,937	15.1%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146,189	145,841	0	0.002	348	0.2%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146,189	145,841	0	0.002	348	0.2%
	행정운영경비(자활지원과)	33	33	0	0	0	0.003%
	기본경비	33	33	0	0	0	0.003%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B -C-D)	불용률
재무활동		190	190	0	0	0	0.0001%
	보전지출	190	190	0	0	0	0.0001%
균형발전특별회계		1,952	1,952	0	0	0	0%
장애인자립지원과		1,952	1,952	0	0	0	0%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1,952	1,952	0	0	0	0%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지원	1,952	1,952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52,291	1,683,870	0	0	68,421	3.9%
복지정책과		1,752,291	1,683,870	0	0	68,421	3.9%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1,752,180	1,683,763	0	0	68,417	3.9%
	기본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1,752,180	1,683,763	0	0	68,417	3.9%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과)	111	107	0	0	4	3.2%
	인력운영비	111	107	0	0	4	3.2%

가. 예산 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 전용 : 총 10건, 419백만원

다. 예산 이체 : 총 77건, 433,734백만원

라. 예산의 변경사용 : 총 27건, 9,879백만원

마. 예비비 사용 : 총 10건, 4,931백만원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총 18건, 22,251백만원

사. 국고보조금 집행

구분	총사업비 (예산액)	보조금수령액 ①	집행액 ②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④ = ① - ② - ③
합계	7,916,485	7,870,546	7,719,816	8,205	142,525
당해(소계)	7,906,509	7,860,570	7,712,660	7,185	140,724
일반회계	5,415,525	5,393,660	5,355,736	7,185	30,73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52,291	1,726,770	1,683,870	0	42,900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738,694	740,140	673,055	0	67,085
명시이월(소계)	2,037	2,037	536	1,020	481
일반회계	2,037	2,037	536	1,020	481
사고이월(소계)	7,939	7,939	6,619	0	1,320
일반회계	7,939	7,939	6,619	0	1,320

3. 기금결산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22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 = ① + ②
		계 ② = ③ - 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계	143,937	29,850	747,436	717,586	173,787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2,827	△353	451	804	12,474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4,184	△202	2,824	3,026	23,982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7,828	478	1,265	787	8,306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99,098	29,927	742,896	712,969	129,025

4. 채권현재액 : 30,658백만원

5. 채무결산 : 해당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2년도말 실국별 관리 공유재산

- 토지 6,033,648 m^2 2,222,355백만원,
- 건물 258,777 m^2 357,716백만원,
- 기타 36건 5,094백만원,

총 2,585,165백만원 상당의 금액

<표> 2022년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22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2,573,157	14,711	2,703	2,585,165	
행정 재산	계	2,573,145	12,952	2,703	2,583,394
	공용재산	1,633,278	1,821	838	1,634,261
	공공용재산	932,254	11,131	1,865	941,520
	기업용재산	7,612	-	-	7,612
	보존재산	-	-	-	-
일반재산	12	1,759	-	1,771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22년도 말 복지정책실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복지정책실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40개, 현재액 54백만원

<표> 2022년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2021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22년도 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38	2	-	2	-	-	-	40
	금액	52	2	-	2	-	-	-	54
일반회계	수량	38	2	-	2	-	-	-	40
	금액	52	2	-	2	-	-	-	54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세입 결산 검토

가. 세입결산 총괄 개요

- 2022 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5조 9,136억 4천 2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조 8,646억 3천 4백만원임. 징수결정액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5조 8,570억 9천 4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5억 4천만원으로, 수납률은 99.9%로 나타남.

<표> 2022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 액 (A)	수납액 (B)	불납 결 손 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합 계	5,913,642	5,864,634	5,857,094	0.2	7,540	99.9%
일반회계	4,161,352	4,162,446	4,154,905	0.2	7,540	99.8%
200 세외수입	59,556	86,796	79,255	0	7,540	91.3%
210 경상적세외수입	13,511	12,415	12,126	0	289	97.7%
211 재산임대수입	609	213	171	0	42	80.1%
211-02 공유재산임대료	609	213	171	0	42	80.1%
212 사용료수입	77	424	424	0	0.3	99.9%
212-08 주차요금수입	67	63	63	0	0	100%
212-08 기타사용료	10	361	361	0	0.3	99.9%
213 수수료수입	35	45	45	0	0	100%
213-01 증지수입	35	45	45	0	0	100%
214 사업수입	12,290	11,049	10,870	0	179	98.4%
214-09 기타사업수입	12,290	11,049	10,870	0	179	98.4%
216 이자수입	500	684	616	0	67	90.1%
216-06 기타이자수입	500	684	616	0	67	90.1%
220 임시적세외수입	46,041	74,126	66,878	0.2	7,248	90.2%
221 재산매각수입	11	18	18	0	0	100%
221-04 불용품매각대금	11	18	18	0	0	100%
223 보조금반환수입	39,531	59,951	56,850	0	3,100	94.8%
223-01 시·도비반환금수입	33,716	52,964	50,961	0	2,003	96.2%
223-02 자체보조금반환수입	5,815	6,987	5,890	0	1,097	84.3%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 액 (A)	수납액 (B)	불납 손 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224 기타수입	3,205	4,095	4,095	0	1	100%
	224-07 그외수입	3,205	4,095	4,095	0	1	100%
	225 지난연도수입	3,295	10,063	5,915	0.2	4,148	58.8%
	225-01 지난연도수입	3,295	10,063	5,915	0.2	4,148	58.8%
	230 지방행정제재·부담금	3	255	252	0	3	98.8%
	233 변상금	3	255	252	0	3	98.8%
	233-01 변상금	3	255	252	0	3	98.8%
300	지방교부세	390	390	390	0	0	100%
	310 지방교부세	390	390	390	0	0	100%
	311 지방교부세	390	390	390	0	0	100%
	311-02 특별교부세	390	390	390	0	0	100%
500	보조금	4,082,638	4,056,704	4,056,704	0	0	100%
	510 국고보조금등	4,082,638	4,056,704	4,056,704	0	0	100%
	511 국고보조금등	4,082,638	4,056,704	4,056,704	0	0	100%
	511-01 국고보조금	4,062,850	4,035,745	4,035,745	0	0	100%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339	9,171	9,171	0	0	100%
	511-03 기금	10,449	11,788	11,788	0	0	1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768	18,556	18,556	0	0.06	99.9%
	710 보전수입등	18,768	18,556	18,556	0	0.06	99.9%
	712 전년도이월금	18,747	18,466	18,466	0	0	100%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8,747	18,466	18,466	0	0	100%
	713 융자금원금수입	21	23	23	0	0	100%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1	23	23	0	0	100%
	715 보조금등 반환금	0	68	68	0	0.06	99.9%
	715-01 국고보조금등반환금	0	68	68	0	0.06	99.9%
의료급여특별회계		1,752,291	1,702,188	1,702,188	0	0	100%
200	세외수입	5,155	6,079	6,079	0	0	100%
	210 경상적세외수입	1,050	1,891	1,891	0	0	100%
	216 이자수입	1,050	1,891	1,891	0	0	1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50	1,891	1,891	0	0	100%
	220 임시적세외수입	2,855	2,974	2,974	0	0	100%
	224 기타수입	2,855	2,974	2,974	0	0	100%
	224-07 그외수입	2,855	2,974	2,974	0	0	100%
	230 지방행정제재·부담금	1,250	1,213	1,213	0	0	100%
	231 과징금	1,250	1,213	1,213	0	0	100%
	231-01 과징금	1,250	1,213	1,213	0	0	100%
500	보조금	868,001	842,480	842,480	0	0	100%
	510 국고보조금등	868,001	842,480	842,480	0	0	100%
	511 국고보조금등	868,001	842,480	842,480	0	0	100%
	511-01 국고보조금	868,001	842,480	842,480	0	0	1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79,134	853,629	853,629	0	0	100%
	710 보전수입등	11,149	11,149	11,149	0	0	100%
	711 잉여금	11,149	11,149	11,149	0	0	100%
	711-01 순세계잉여금	11,149	11,149	11,149	0	0	100%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 액 (A)	수납액 (B)	불납 결 손 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720 내부거래	867,986	842,480	842,480	0	0	100%
721 전입금	867,986	842,480	842,480	0	0	1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867,986	842,480	842,480	0	0	100%

- 최근 3년간 복지정책실의 세입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2021년의 경우 미수납액이 132억 4천9백만원(수납률 99.7%) 로 저조하게 나타났으나, 전년도의 경우 미수납액이 75억 4천만원(수납률 99.8%)로 2020년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표> 복지정책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2022	4,161,352	4,162,446	4,154,905	0	7,540	99.8
2021	3,736,712	3,787,454	3,774,204	0	13,249	99.7
2020	3,485,697	3,446,328	3,437,734	0	8,595	99.8

- 복지정책실 과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세입예산이 가장 많은 과는 어르신복지과로 총 세입예산액은 2조 6,367억 3천7백만원으로 복지정책실 전체 세입예산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임대료, 장사시설 기타 사업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022년도 복지정책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복지정책실	4,161,352	4,161,352	4,162,446	4,154,905	0	7,540	99.8%
복지정책과	879,320	879,320	876,521	875,449	0	1,072	99.9%
안심돌봄복지과	40,549	40,549	41,717	40,820	0	897	97.8%
어르신복지과	2,636,737	2,636,737	2,633,211	2,630,172	0	3,039	99.9%
장애인복지정책과	54,652	54,652	58,664	57,131	0	1,533	97.4%
장애인자립지원과	445,542	445,542	447,220	446,501	0	719	99.8%
자활지원과	104,551	104,551	105,113	104,833	0	280	99.7%

- 어르신복지과의 경우 전체 세입예산이 많은 만큼 미수납액도 6개 과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납률로 살펴보면 가장 미수납액이 많은 과는 장애인복지정책과(97.4%)로 나타남.

나. 세입예산 집행 철저 필요

- 복지정책실 소관 22년도 세입예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세입예산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 차이발생(20%) 과목별 현황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 액(B)	과부족액 (B-A)	과부족 상세사유	차액비율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608,928	213,028	170,687	△438,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모공원 부대시설 사용료 미수납액(42백만원) ◦ 세입과목 일부 변경 사용 : 공유재산임대료 → 기타사용료(361백만원) 	△72%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 액(B)	과부족액 (B-A)	과부족 상세사유	차액비율
212-09 기타사용료	9,810	361,198	360,945	351,135	◦세입과목 일부 변경 사용 : 공유재산임대료 → 기타사용료(361백만원)	3579%
213-01 증지수입	35,487	44,887	44,887	9,399	◦재증명 발급 건수 증가	26%
216-03 기타이자수입	499,557	683,902	616,422	116,865	◦최근 3년간 결산액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실제 이자수입 수납액과 차이 발생	23%
221-04 불용품 매각대금	10,500	17,746	17,746	7,246	◦내구연한 경과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예상보다 불용물품 매각대금 수입 발생 증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노후차량 매각대금 연내 미반환(6,736천원)	69%
223-01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	33,715,718	52,964,058	50,960,790	17,245,072	◦최근 3년간 결산액을 바탕으로 세입 추계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자치구 보조수입 반환금 실제수납액이 세입 추계액 초과	51%
224-07 그외수입	3,204,940	4,095,095	4,094,523	889,583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및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등으로 징수하여야하는 보조금 반환금을 그외수입으로 징수하여 과다 수납발생	28%
225-01 지난년도수입	3,295,260	10,062,729	5,914,887	2,619,627	◦최근 3년간 결산(전망)액 산술평균 세입추계 예산액과 실제수납액 차이 발생	79%

예산과목	예산액(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B)	과부족액(B-A)	과부족 상세사유	차액비율
233-01 변상금	3,335	254,806	251,731	248,396	◦ 승화원 부대시설 무단점유('22.1.~11.) 및 시유재산(묘지 등) 변상금 부과	7448%
715-01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0	67,827	67,769	67,769	◦ 2021년 장애인 거주시설 가능보강 사업, 직업재활시설 가능보강 사업, 피해장애인 쉼터 등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발생 ※ 2022년 세입 과목 신설되어 예산 미편성	100%

- 22년도 복지정책실 세입예산 가운데 추모공원 부대시설 사용료 관련 미수납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미 징수액 4천 2백만원이 발생하였고, 관련하여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수입인 변상금 2억5천1백만원의 발생으로 세입과목을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기타 사용료로 일부 변경하였음.
- 21년에도 시립승화원 계약종료에 따른 검수금액변동과 공유재산임대료 3억6천만원의 기타사용료 변경 사용내용이 동일했던바, 2022년에도 예산 편성시 관련 내용을 반영했어야 할 것임.
- 시립승화원의 공유재산임대료는 승화원 부대시설(식당·매점·카페·자판기) 운영업체 [(주)높빛] 의 사용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립승화원은 2012년부터 승화원의 부대시설 운영자를 입찰로 선정하고 있으며 (주)높빛은 2018.11.1.~2021.10.31.까지 3년 계약을 하였으나 사용료 미납 등으로 계약해지('20.11.30) 후 무단점유 중에 있어 수입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서울특별시립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 현황

□ 운영현황

구분	계	식당	편의점	커피점	자판기	공용면적
면적	1,273㎡	627㎡	88㎡	9㎡	14대	529㎡

□ 점유시설 현황

대상시설	舊 운영계약자	계약기간	무단점유기간	면적
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식당·매점·커피·자판기)	(주)높빛	'18.11.1~'21.10.31. (해지 2020.11.30.)	2020.12.01. ~2022.11.01.	1,272.70㎡

- 이에, 서울시에서는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업체(높빛)의 무단점유가 장기·지속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에 따라 변상금 부과계획을 세운바 있으며
- 운영자인 (주)높빛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입감소로 사용료 등을 낼수 없는 상황에 지역발전수익금 미납 등으로 2020.11.30. 계약이 해지되었음.

《 지역발전수익지원금 》

- ▶ 승화원 인근 지역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되는 금원
- ▶ 부대시설 운영업체 선정 시 **입찰 참가업체에서 가능 금액을 제안** * 2018년도 최초 도입
- ▶ **운영업체에서 주민협의회에** 매년 7억원을 직접 지급하도록 명시

- (주)높빛은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을 무단점유(무단점유기간 : 2020.12.01.~2022.11.1.)하여 무단점유 기간동안의 총 변상금 4억 5,154만원을 징수하였음.

- 세외수입의 편성에 있어 세입규모를 추계한 예산액과 회계연도 내 실제여건이 반영된 징수결정액 격차가 최소가 될 경우 예산액 상의 추계가 보다 더 면밀한 것이라 할 것이며,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결국 유용한 세출 재원의 확보로 이어지므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단계에서 집행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음.
- 시립승화원 무단점유와 같이 예측불가능한 사안이었다는 측면이 인정되나, 2년간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세입예산의 착오편성은 정확한 세수추계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음.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임.

다. 국고보조금의 과소(대) 또는 미교부 사례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정 목적으로 집행하도록 사업별 용도와 조건을 지정하여 이전하는 재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국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국가와 지방이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 복지정책실 22년도 세입예산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과교부되거나 미교부 사례는 아래 표와 같음.
-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정해진 매칭 비율에 의한 서울시 예산의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이로 인해 사업의 예측가능성, 안정성 및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국고보조금은 일반적으로 가내시 및 확정내시를 통하여 지급됨. 서울시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대부분 가내시된 국고보조금 자료에 의지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 이후 국고보조금이 과소하게 확정내시 될 경우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할 것임.
-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사장을 막고 재원이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편의적이고 일방적인 국고보조금 변경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표>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확보)액			차액	미교부 및 과소 교부 사유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1	복지정책과	이태원 사고 장례비 지원	1,500,000	1,050,000	450,000	1,401,650	951,650	450,000	98,350	◦장례비 지원 금액에 맞춰 교부액 조정
2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1,010,944,269	686,816,000	324,128,269	1,001,761,269	677,633,000	324,128,269	9,183,000	◦사업 추진에 따른 실 집행액을 고려하여 국비 예산 감액 교부(2022.10.19. 감액변경내시)
3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168,223,000	168,223,000	-	167,370,580	167,370,580	-	852,420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실 집행액을 고려하여 국비 예산 감액 교부(2022.10.7. 감액변경내시)
4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18,999,619	853,000	18,146,619	18,999,329	852,710	18,146,619	290	◦국비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일부 감액(확정내시 2021.12.22.)

연번	부서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확보)액			차액	미교부 및 과소 교부 사유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5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사업	1,749,396,156	866,556,200	882,839,956	1,723,875,363	841,035,407	882,839,956	25,520,793	◦의료급여사업 추진에 따른 실적행액을 고려하여 국비 예산 감액 교부(2022.8.29. 감액변경내시)
6	안심돌봄복지과	긴급복지지원사업	40,654,500	27,103,000	13,551,500	39,720,350	26,168,850	13,551,500	934,150	◦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실적행액을 고려하여 국비 예산 감액 교부(복지부 2차 변경내시, 2022.9.22.)
7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시설기능보강	9,821,262	5,578,046	4,243,216	7,035,182	2,791,966	4,243,216	2,786,080	◦ 국고보조 신청사업 중 보건복지부 최종사업선정에 따른 변경내시(22.3.18.)로 교부액 감소
8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지급	2,740,152,565	2,424,724,508	315,428,057	2,729,526,621	2,414,098,564	315,428,057	10,625,944	◦ 시도별 예산 조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감액 변경내시('22. 11. 30.)에 따른 과소 교부
9	장애인복지정	장애인거주시설	112,035,410	45,516,825	66,518,585	111,328,545	44,809,960	66,518,585	706,865	◦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 휴일수당으로

연번	부서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확보)액			차액	미교부 및 과소 교부 사유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책과	운영								일부 예산변경함
10	장애인 복지정 책과	장애인거 주시설 기능보강	731,706	365,853	365,853	709,926	344,073	365,853	21,780	◦보조사업 결정취소(1개소, 21,780천원)되어 미교부 *2022년도장애인거 주시설기능보강사업 변경내시(6차)통보(보건복지부장래인권 익지원과-5145(20 22.9.26.))
11	장애인 자립지 원과	장애수당 -차상위 등	11,415,814	5,707,907	5,707,907	10,945,774	5,237,867	5,707,907	470,039	◦ 급여지급 대상자는 자격변동(소득·재산 증감, 신규 편입 및 급여중지 등)으로 연도 중에 증감되어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
12	장애인 자립지 원과	중증장애 인연금	156,431,965	92,811,798	63,620,167	155,060,158	91,439,991	63,620,167	1,371,806	◦ 급여지급 대상자는 자격변동(소득·재산 증감, 신규 편입 및 급여중지 등)으로 연도 중에 증감되어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

2 세출 결산 검토

가. 세출결산 총괄 개요

- 복지정책실 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조 8,569억 8천 8백만원이고, 이 중 7조 7,115억 6천 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94억 5천만원(불용률 1.9%)으로 나타남.
- 복지정책실에서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과는 안심소득추진과로 전체 예산 2억 4천3백만원 가운데 2억 4천2백만원을 집행해 99.7%의 집행률을 보였고, 집행률이 가장 낮은 과는 장애인복지정책과로 전체 예산 2,068억 6천7백만원 가운데 1,837억 6천9백만원을 지출해 88.8%의 집행률을 보임.
 - 장애인복지정책과의 집행이 낮은 주요 사유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폐쇄로 인한 15억 6천4백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45억 2천5백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7억 1천 4백만원임.

<표> 2022년도 복지정책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복지정책실	7,836,944	7,856,988	7,711,568	22,251	13,719	109,450	98.1
복지정책과	2,597,691	2,598,866	2,539,641	1,029	5,978	52,219	97.7
안심소득추진과	243	243	242	0	0	1	99.7
안심돌봄복지과	295,397	295,976	292,729	0	0	3,246	98.9
어르신복지과	3,448,428	3,456,124	3,430,679	5,343	38	20,064	99.3
장애인복지정책과	206,202	206,867	183,769	9,774	2,419	10,905	88.8

구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A-B-C- D)	집행률 (B/A)
장애인자립지원과	1,077,759	1,087,687	1,062,281	6,105	5,284	14,017	97.7
자활지원과	211,224	211,224	202,227	0	0	8,997	95.7

<표> 복지정책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 금	불용액	집행률
2022년도	7,836,944	7,856,988	7,711,568	22,251	13,719	109,450	98.1
2021년도	7,104,410	7,149,106	7,042,330	15,113	18,489	73,174	98.5
2020년도	6,751,621	6,774,765	6,571,998	20,247	33,687	148,833	97.0

- 최근 3년간 복지정책실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출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집행률은 9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22년도 복지정책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음.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급여기금으로, 「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세입, 세출항목이 정해져 있으며, 동 법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드는 비용, 업무위탁에 드는 비용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22년도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조 7,522억 9천1백만원 가운데

1조 6,838억 7천만원을 지출해 96.1%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음.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정책실 22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구립강동장애인복지관 건립,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증축 설계비 2개 사업에 총 19억 5천1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액 집행이 끝난 것으로 나타남.

<표> 2022년도 복지정책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 잔액 (A-B-C-D)	집행률 (B/A)
복 지 정 책 실	1,754,156	1,754,242	1,685,822	0	0	68,421	96.1
복지정책과	1,752,291	1,752,291	1,683,870	0	0	68,421	96.1
의료급여기특별회계	1,752,291	1,752,291	1,683,870	0	0	68,421	96.1
장애인지립지원과	1,865	1,951	1,951	0	0	0	100
균형발전특별회계	1,865	1,951	1,951	0	0	0	100

나. 예산의 변경사용

1) '22 회계연도 예산의 변경(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 예산변경은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신속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방재정법 제47조¹⁾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임.
- 복지정책실 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표> 2022년도 복지정책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이용	전용	변경	이체
건수	-	10	27	71
승인금액	-	419	9,879	425,506

<표> 2022년도 복지정책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이용	전용	변경	이체
건수	-	-	-	6
승인금액	-	-	-	8,228

-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10건(4억 1천 9백만원), 예산변경은 총 27건(98억 7천 9백만원), 예산이체는 총 71건(4,255억 6백만원) 으로 나타남.

- 특별회계는 예산이체 총 6건(82억 2천 8백만원) 으로 나타남.

- 예산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복지정책실 22년도 결산안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

가) 예산의 전용

- 예산전용은 행정과목인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의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22년도 복지정책실 예산 전용 건수와 금액은 10건, 4억 1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전용 건수 13건, 14억 2천 2백만원에 비해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용의 주요 사유는 중증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돌봄 단기거주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확보, 보훈단체 냉난방 노후화로 위한 사무환경 개선 지원 등 긴급 필요성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비 가운데 일반관리비 항목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편성 단계에서 사무관리비로 잘못 편성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용을 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추후 예산 편성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민간위탁금(307-0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

사무관리비(201-01): 6. 임차료

가.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나.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

다. 물건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라. 버스, 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

마.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표> 2022년도 복지정책실 예산 전용내역

(단위: 천원)

연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 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571,500	14,000	-	2022-12-09	2,501,500	98%	보훈단체 사무실 냉난방비 노후화로 인한 사무환경개선 사업 추진
		보훈단체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020,000	-	14,000		84,000	8%	
2	복지정책과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1,373,600	45,000	-	2022-06-22	27,319,850	87%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문자서비스 (23종) 확대 및 알림서비스 신청자 증가로 인한 문자 사용료 부족액 확보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및 복지포털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944,678	-	45,000		971,023	98%	
3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3,868,918	44,000	-	2022-10-27	3,824,918	100%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임대료를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도록 전용처리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656,604	-	44,000		693,396	99%	
4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놀이터 조성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00,000	15,000	-	2022-11-03	585,000	100%	어르신놀이터 조성 가이드라인을 수립 용역비 집행
		어르신 놀이터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	-	15,000		-	0%	
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단거주시설	307-10	18,633,000	100,000	-	2022-09-16	17,257,018	93%	중증뇌병변장애인

연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 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간급수시돌봄 단기거주시설 리모델링 사업 추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0,000	-	100,000		500,000	100%	
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67,200	22,000	-	2022-10-17	28,527	63%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추진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129,359	-	22,000		1,151,359	100%	
		장애인복지관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5,971,490	9,000	-		65,923,477	100%	
7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6,200	-	9,000	2022-12-20	24,216	96%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 센터 등 하반기 지도점검 수행 시 외부 전문가 (공인회계사) 수당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모 사업 (신규지원, 종사자 추가지원 등)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전용
		장애인복지관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5,974,926	3,436	-		2022-12-20	65,923,477	
8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5,974,926	3,436	-	2022-12-20	65,923,477	100%	'22. 5월부터 사업 시행중인 중증장애인세대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 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장애인복지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6,000	-	3,436		59,436	100%	수도요금 감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언론홍보비 부족분 확보
9	자활지원과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7,609,581	47,622	-	2022-08-26	7,069,550	93%	22년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완료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미지원된 사업 추진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비)	402-03 민간위탁사업비	587,135	-	47,622		588,798	93%	
10	자활지원과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7,729,045	119,464	-	2022-08-26	7,069,550	93%	22년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완료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미지원된 사업 추진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비)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748	-	119,464		124,212	100%	

나) 예산의 변경

- 예산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복지정책실 22년도 예산변경사용 건수는 총 27건, 98억 7천 9백만원으로, 21년도에 비해 건수(전년도 35건)는 줄었으나, 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전년도 75억 7천 3백만원, 전년대비 23억 6백만원 증가)
- 복지정책실 22년도 변경의 경우, 기초생활급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다른 변경(2,495백만원), 긴급틈새돌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매칭시비 확보 (220백만원) 등 증액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 어르신복지시설 긴급 기능보강 지원을 위한 예산변경,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돌봄 한시지원 추진을 위한 예산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의 변경사용은 세부사업간의 예산을 변경하고, 그 책임성이 집행기관에 있어 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면이 있다고 할 것임. 그러나, 결산시기가 되지 않으면 예산의 변경사용에 대하여 알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2022년도 복지정책실 예산변경 내역

(단위: 천원, %)

연도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	보훈대상자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67,694,000	48,000	0	2022-09-20	65,327,806	96.6%	5.18민주화운동 관련 신규 공법단체 출범에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보훈단체 지원	307-03 민간단체법 정운영비보 조	444,600	0	48,000		492,600	100.0%	따라 운영비 보조금 지원(부상자회 및 공로자회 22년 3월 설립)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308-01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978,555,113	1,000,000	0	2022-1	958,892,028	98.1%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가 부족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29,893,888	0	1,000,000	1-29	30,118,442	97.5%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예산 활용하여 확보
3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17,780	223,892	0	2022-0	30,118,442	97.5%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22.8.10.)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재산장제급여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420,000	0	223,892	8-18	518,498	80.5%	따라 생계급여및 재산장제급여 간 예산 조정
4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308-01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980,826,489	2,271,376	0	2022-0	958,892,028	98.1%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22.8.10.)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재산장제급여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5,234,533	0	2,271,376	8-18	7,505,909	100.0%	따라 생계급여및 재산장제급여 간 예산 조정
5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 및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78,200	20,000	0	2022-0	47,058	80.9%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가자 모집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비 확보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및 복지포털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38,448	0	20,000	1-18	441,400	87.5%	
6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306-01 출연금	18,979,619	200,000	0	2022-0	18,779,329	100.0%	2022년 간급틈새돌봄지원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 교부된 국비에 대한 매칭 시비 확보
	간급 틈새 돌봄지원사업	308-11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240,000	0	200,000	7-18	240,000	54.5%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일 승인일자	변경후예산집행 상황		변경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7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306-01 출연금	18,999,619	20,000	0	2022-0 2-09	18,779,329	100.0%	2021년 간급틈새돌봄지원 사업 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으로 추가 교부된 국비에 대한 매칭 시비 확보
	간급-틈새 돌봄지원사업	308-11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20,000	0	20,000		240,000	54.5%	
8	서울형 간급복지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2,000,000	39,000	0	2022-0 8-22	11,161,599	93.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주관) 대상 광역시도로 선정('22.7월)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해 예산 변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65,000	0	39,000		104,000	100.0%	
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46,500	6,000	0	2022-0 8-29	32,476	80.2%	2022.8.19. 자 조직개편으로 약외의동행정추진단 이 신설됨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의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해 예산 변경 ※ '22.10. 사업 이판 이전 변경 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204-03 특정업무경 비	0	0	6,000		5,256	87.6%	
10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전환사업)	307-10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보조	4,176,073	150,000	0	2022-0 7-07	3,639,904	90.4%	어르신 양로시설 도시가스, 전기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에 따른 관리운영비 재원 부족 및 코로나-19 방역 수칙 완화로 프로그램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전환사업)	307-05 민간위탁금	2,896,445	0	150,000		2,912,096	95.6%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일 승인일자	변경후예산집행 상황		변경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1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307-11 사회복지사 업보조	5,350,046	750,000	0	2022-0 7-26	4,210,662	91.5%	시립마포살버케어 센터 준공 연장에 따른 시설 운영비 및 개원준비단 인건비 추가지원, 시립동대문살버케 어센터의 입소정원 도달시까지 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추가 지원 등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307-05 민간위탁금	2,590,133	0	750,000		3,330,632	99.7%	
12	어르신 복지시설 가능보강	402-02 민간자본사 업보조 (이전채원)	3,836,892	356,368	0	2022-0 4-25	452,881	14.5%	간급 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사급한 시립중계노인전문 요양원 가능보강사업 지원
	어르신 복지시설 가능보강	402-03 민간위탁사 업비	5,054,040	0	356,368		6,258,346	97.5%	
13	어르신 복지시설 가능보강	402-02 민간자본사 업보조 (이전채원)	3,480,524	366,801	0	2022-1 1-03	452,881	14.5%	시립동대문살버케 어센터 개원 지원 예산 확보
	어르신 복지시설 가능보강	402-03 민간위탁사 업비	5,410,408	0	366,801		6,258,346	97.5%	
14	어르신 복지시설 가능보강	403-01 자치단체자 본보조	895,330	105,912	0	2022-1 1-03	704,006	89.2%	간급 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사급한 시립중계노인전문 요양원 가능보강사업 지원
	어르신 복지시설 가능보강	402-03 민간위탁사 업비	5,777,209	0	105,912		6,258,346	97.5%	
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226,258,115	186,000	0	2022-1 2-06	224,658,115	99.4%	2022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 기 판성 예산 대비 접종비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186백만원)) 확보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100,000	0	186,000		1,283,000	99.8%	
16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0,161,599	46,325	0	2022-1 1-25	9,674,726	95.6%	경로당 방난방비 지원 단가 인상결정으로 국비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일 승인일자	변경후예산집행 상황		변경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2,639,821	0	46,325		2,686,146	100.0%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
17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402-03 민간위탁사 업비	1,145,740	2,817	0	2022-0 2-15	1,641,586	97.0%	1억이상 시립노인종합복지 관 기능보강사업에 감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변경하여 기능보강사업 추진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401-02 감리비	0	0	2,817		12,601	99.9%	
1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2,500,000	100	0	2022-1 1-28	11,944,058	95.6%	보건복지부 추경(난방비)에 따라 확정내시가 변동되어 매칭시비 확보를 위해 단위사업 내 통계목 간 예산 변경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307-05 민간위탁금	576,100	0	100		576,200	100.0%	
19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5,378,689	214,988	0	2022-0 4-18	5,520,366	88.6%	22년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예산에 종사자 인건비와 휴일수당을 통합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이 “장애인거주시설운 영비”와 “장애인거주시설휴 일수당”으로 분리 교부되어 예산변경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휴일수당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0	0	214,988		70,435	32.8%	
2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보조	93,373,539	1,206,942	0	2022-0 4-18	98,725,988	94.6%	22년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예산에 종사자 인건비와 휴일수당을 통합 편성하였으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휴일수당 지원	307-10 사회복지시	0	0	1,206,942		635,393	52.6%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설법정운영 비보조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이 “장애인거주시설운 영비”와 “장애인거주시설휴 일수당”으로 분리 교부되어 예산변경
21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207-02 전산개발비	574,265	26,623	0	2022-1 1-11	0	0.0%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코자 개최하는 설문조사 및 정책토론회 예산 마련을 위해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간 예산 조정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000	0	26,623		3,732	12.6%	
2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07-11 사회복지사 업보조	43,600,606	181,000	0	2022-1 1-21	43,368,994	99.9%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는 시립 장애인직업재활시 설의 4분기 (11~12월) 종사자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여, 사회복지사업보조 비용 예산액에서 예산 변경사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889,155	0	181,000		3,066,965	99.9%	
23	장애인복지관 운영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66,374,926	400,000	0	2022-0 6-20	65,923,477	99.9%	자치단체경상보조 금으로 편성된 스마트발달트레이 닝 사업비를 시립시설로 교부 (민간위탁금)하기 위해 변경 사용
	장애인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3,079,879	0	400,000		23,479,879	100.0%	
2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3,449,141	101,500	0	2022-1 1-29	10,159,101	76.1%	장애인등록잔단비 국비내시 증액 교부에 따른 매칭사비 확보를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일 승인일자	변경후예산집행 상황		변경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97,233	0	101,500		244,261	81.8%	위해 불용 예상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예산 일부 변경
2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4,947,193	1,498,052	0	2022-1 1-10	10,159,101	76.1%	'22년 장애수당(기초)의 지원대상자 증가로 국고보조금 증액되어, 불용 예상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예산 일부 변경
	장애수당-기초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21,131,266	0	1,498,052		22,243,218	98.3%	
26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8,448,000	266,122	0	2022-1 2-14	6,781,278	82.9%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 선제적 대비 위해 코로나19 한시 지원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해 불용 예상되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예산 일부 변경
	코로나 19 돌봄 한시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065,824	0	266,122		1,331,946	100.0%	
27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1,164,320	191,332	0	2022-1 1-10	10,629,872	96.9%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매칭 시비보조금 증액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유보액을 변경 사용
	자활근로사업 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12,534,631	0	191,332		112,725,963	100.0%	

(1)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및 복지포털 유지관리

- 해당 변경내역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가자 모집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 및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사업에서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및 복지포털 유지관리」로 2천만원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남.

<표>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복지포털 유지관리 예산 변경내역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 및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78,200	20,000	0	2022-01-18	47,058	80.9%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가자 모집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비 확보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및 복지포털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38,448	0	20,000		441,400	87.5%	

-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및 복지포털 유지관리는 복지·건강 업무 등 시·자치구, 민간기관의 복지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및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복지분야의 정보를 안내하는 “서울복지포털” 두 개의 사이트를 유지 및 관리하는 것임.
 -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은 시·자치구 공무원, 복지기관 복지담당자 약 5,200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자원관리, 돌봄SOS 센터, 서울형 긴급복지, 어르신방문건강 등의 복지업무를 통합관리 하고 있음.(접속주소 : wis.eseoul.go.kr)

- “서울복지포털”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복지분야의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접속주소 : wis.seoul.go.kr)

-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변경을 통해 확보한 2천만원과 기존 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을 합산해 총 5천만원의 예산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 온라인 접수대행 서비스 운영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안심소득 1차 시범사업은 22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온라인 접수는 22년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12일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안심소득 시범사업 개요 (22년 기준)

○ 지원대상 :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800가구 ※ 비교집단 1,600가구

- ▶ 1단계(3년) :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선정, 중위 85%의 미달액의 50% 지원
- ▶ 2단계(2년) : 중위소득 50~85% 300가구 추가 선정, 중위 85%의 미달액의 50% 지원

- 대상범위 : 서울시 전체(25개 자치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 재산기준 : 326백만원 이하
- 지원단위 : 가구
- 지원기간 : '22.7월 ~ '25.6월(3년)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지원
- 참가가구 모집 및 선정

참가가구 모집 (시, 복지재단)	1차 선정 (시, 복지재단)	신청서류 접수(동주민센터)	소득·재산 조사(자치구)	2차 선정 (시, 복지재단)	최종 선정 (시, 복지재단)
온라인 공개모집·접수 (콜센터 병행운영)	비비레 할당 무작위 선정 5,000가구	안심소득 급여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기준 소득 이하 가구 선별 중위소득 50% 이하	1,800가구 사전 설문조사 기초선조사	지원집단, 비교집단 무작위 배분 최종선정

- 안심소득 1차 시범사업 접수결과 온라인 공개모집은 30,671건²⁾이 접수되었으며, 이를 통해 선정된 가구는 500가구로 나타나고 있음.
- 2022년 본예산 편성시에는 안심소득추진과가 별도로 신설되기 전³⁾이라 서울시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안심소득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음.
- 이에 따른 22년도 복지재단 안심소득 관련 운영 예산은 184백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이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행사홍보비 등이 편성된 바, 집행기관에서는 22년 본예산 편성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등으로 해당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표> 서울시복지재단 2022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운영예산 집행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편성목	예산액	산출내역	지출액		집행률 (%)
	총 계	184,310		181,259		98.3
1	일반 운영비	4,310	제안서 평가회의 수당 및 진행	929	3,781	87.7
			상담원 교육 매뉴얼 제작	990		
			전화접수장비 설치 관련	990		
			약정 진행 물품 구입	127		
			대표전화(1668-1735) 콜시스템 이용료 및 통화비 (7.16~12.31)	746		
2	연구 개발비	140,000	전담콜센터 운영 용역	129,978	139,478	99.6
			사업안내 및 오리엔테이션 영상컨텐츠제작	9,500		
3	행사홍보비 (예산이용)	40,000	출범식 및 약정행사 용역	38,000		95.0

2) 총 접수는 33,803건으로 온라인 접수는 30,617건(90.5%), 전화접수지원이 3,214건(9.5%)로 나타남.

3) 2022.8. 조직개편시 안심소득추진과 신설

- 2020년 3월 재난긴급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시 114만건이 신청·접수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전용金は 안심소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시점에서 충분히 예상해 편성되었어야 할 예산으로 사료됨.
- 이처럼 사업 계획 추진시 충분히 고려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타 사업으로부터 예산을 내역변경하여 사용한 점 등에서 해당 예산 집행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 특히 예산변경 시점이 대부분의 예산 방침 등이 세워지지 않은 연초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집행 기관에서는 추후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다. 예산의 이체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2항4)에 따르면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 조례, 제정, 개폐 시 예산을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2년도 복지정책실 예산의 이체사용은 총 77건, 금액은 4,337억 3천 4백만원으로 나타남.
- 이 가운데 총 74건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2022.8.19.)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4) 「지방자치법」 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 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복지정책실 이체 내역

구분	내역	비고
내부이동 (56)	복지정책과→안심소득추진과(4)	안심소득추진과 신설
	인생이모작지원과→어르신복지과(26)	인생이모작지원과 폐지에 따른 업무이관
	장애인복지정책과→장애인자립지원과(26)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등 업무 이관
타 실국이동 (18)	인생이모작지원과→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18)	보람일자리, 50+재단 및 센터 관련 업무 이관

○ 이 외에도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에서 총괄수행하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복지정책실로 이관됨에 따른 이체가 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라. 예산 이월사업

○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7조5)에서 명시된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회계연도의 구분이 문란하게 되면 적절한 재정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5)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이월제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나눌수 있으며 명시이월의 경우 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지게 됨.
- 사고이월은 사업 집행을 위해 지출원인행위(계약 또는 발주)를 한 후 연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예산을 차년도로 넘겨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업이 당해 연도에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복지정책실 22년도 사고이월은 총 12건, 110억 7천9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2년도 복지정책실 사고이월 내역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이월사유
1	가족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사무관 리비	120,000	97,115	18,276	78,839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표본수 변경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으로 준공기한이 연기됨에 따라 사업비 이월
2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시설비	14,486,990	14,486,988	9,391,540	5,093,276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사업비 이월
3	어르신 복지시설	감리비	1,363,997	1,363,997	1,137,402	226,595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도 내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 도 이월액	이월사유
	설치 지원						집행 불가하여 사업비 이월
4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지원	시설부 대비	14,170	5,566	5,566	8,600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공사 추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감독여비 등) 이월
5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무관 리비	15,000	14,250	0	14,250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도 내에 집행 불가하여 사업비 이월
6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무관 리비	29,623	21,782	3,732	18,050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 계약을 22.12.6일 체결하였으나 연내 용역 완료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용역 기간을 23.1.31로 연장하여 사고이월 필요
7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전산개 발비	547,642	534,080	0	534,080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용역을 23.6월까지 수행 예정으로 이월 필요
8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 관 별관 건립	시설비	5,406,189	5,406,189	2,509,813	2,896,376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도내 집행 완료 불가능하여 이월 후 23년 집행 예정
9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 관 별관 건립	감리비	844,593	844,593	733,282	111,311	건설사업관리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완료 불가능하여 이월 후 23년 집행 예정
10	반다비체육 센터 건립	시설비	3,950,000	1,175,955	132,205	1,020,000	설계용역 진행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하여 이월 후 23년 집행
11	시립발달장 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시설비	1,000,000	1,000,000	72,330	927,670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완료 불가능하여 이월 후 23년 집행 예정
12	시립발달장 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감리비	150,000	150,000	0	150,000	건설사업관리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완료 불가능 하여 이월 후 23년 집행 예정

1)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 해당 사업은 서울시 내 저소득층 가족돌봄청년의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정책 추진방향과 수행과제 도출을 위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22년 8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당초 집행기관에서는 22년 9월 30일까지 실태조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 22년 12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해당 용역 계약 추진 과정에서 전수조사 설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과업내용이 변경되면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해 예산을 사고이월시켜 23년 3월 과업이 완수되도록 최종 조정한 것으로 나타남.⁶⁾

<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과업내용 변경 사항

당초	변경
① 전수조사를 위한 설계 - 중·고등학생(14-19세) 유효 응답자 1,000명 이상 - 학교밖청소년(14-19세) 유효 응답자 500명 이상 - 청년(20~34세 대상 유효 응답자 1,000명 이상	① 전수조사를 위한 설계 - 중·고등학생(14-19세) 유효 응답자 1,500명 이상 - 학교밖청소년(14-19세) 유효 응답자 200명 이상 - 청년(20~34세 대상 유효 응답자 1,000명 이상 (<u>미혼모 등 한부모가정 응답자 100명 포함</u>)
②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서울시 청소년·청년(14~34세) 대상 1차 설문조사 - 1차 설문조사 대상자 중 추출하여 FGI	②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서울시 청소년·청년(14~34세) 대상 1차 설문조사 - 1차 설문조사 대상자 중 추출하여 FGI

6) 실태조사 용역 착수 : '22.10.27
실태조사 용역 변경계약 체결 : '22.12.6.

당초	변경
<p>표적면접 또는 IDI 개인심층면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설문조사 응답자 중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10% 이상을 심층면접하되, 인원은 최소 30명 이상 	<p>표적면접 또는 IDI 개인심층면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설문조사 응답자 중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10% 이상을 심층면접하되, 인원은 최소 30명 이상(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0명 내외 추가면접 진행)
<p>③ 조사표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의미한 결과 도출·정책 대상자 발굴을 위한 설문지 문항 개발하되 주요 조사항목(개인특성, 가족생활, 경제상황 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p>④ 조사표 지침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진행계획 수립·실사조직 관리·조사일정·조사원 관리·설문조사 응답률 제고방안 수립 등 	<p>④ 조사표 지침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진행계획 수립·실사조직 관리·조사일정·조사원 관리·설문조사 응답률 제고방안 수립, 홍보계획 마련(홍보물 제작, 배너광고 등)
<p>⑤ 조사결과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돌봄청년 대상자 자치구별·연령별·가구형태별 기본 통계 분석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방향·사회서비스개발방안·최소 3인 이상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정책제언·시사점 도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반영해 해당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실태조사 설계시 기본적으로 고려되었어야 할 실태조사 대상자 수 등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남.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워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음.

2)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 만 6세이상 장애인에게 서울 버스를 이용하거나 수도권 버스를 환승하여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 등 이동권 보장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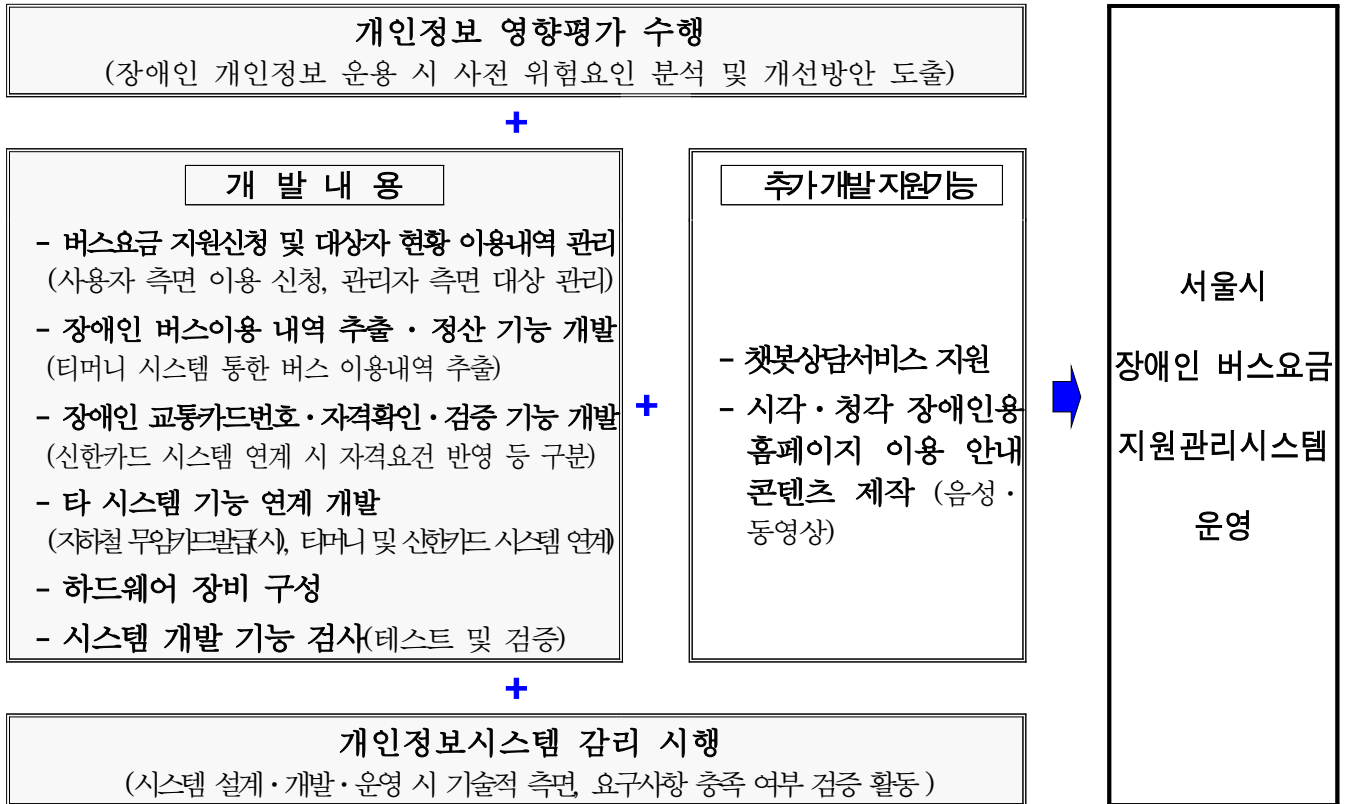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추진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 (약 39만명)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동행하는 사람 1명 무료승차 지원
- 지원기준 : 월 최대 5만원
- 지원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경기·인천버스 환승요금
- 지원방법 : 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 정산하여 계좌환급
- 시행시기 : 2023년 8월

- 본 사업은 2022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장애인 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5억 7,72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역 수행이 연내에 완료할 수 없다는 사유로 5억 5,213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 21,403천원 불용율 3.7%임.
 - 또한 집행부서에서는 장애인 버스요금 사업추진에 반영하고자 세부 실행 계획 수립전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정책토론회 등을 위해 예산 26,623천원을 전산개발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2.11월 변경 사용함.
-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계획에 의하면 당초 버스요금 지원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22.7~9월까지 계약심사,사업발주, ‘22.10~‘23.4월까지 계약체결 및 개발로 추진일정을 세웠으나

-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22.12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문조사 또한 '22.12월에 계약체결후 연내에 완료예정이었으나 과업추진일정 지연으로 23.1월까지 연장함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음.

〈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구성도



- 장애인버스요금 지원관리 시스템 구축용역 등은 사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다음연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었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추가 확보된 자원 범위 내 시급한 필수 소요액을 우선 반영해야하는 추경예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용역사업은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다. 예산 불용사업

-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한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됨.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출예산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정확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음.
-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이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의 변화로 인한 불용액 발생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도 일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자치구 및 타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신규기관 미선정 등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집행에 있어 집행부의 적극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음. 집행기관에서는 반복적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복지정책실 22년도 20%이상 불용 사업은 총 16개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복지정책실 2022년도 20%이상 불용사업

(단위 :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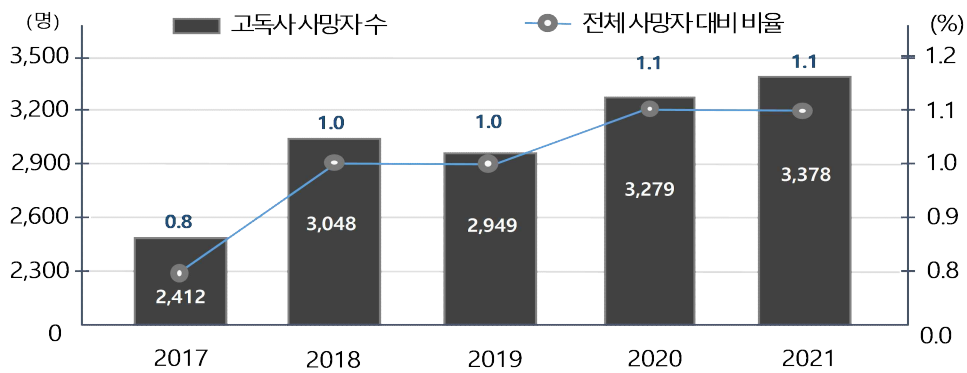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최종예산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1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3,601,508	3,601,508	3,601,508	911,339	25.3%
2		간급특새 돌봄지원사업	0	220,000	440,000	200,000	45.5%
3		서울특별시복지상 시상	35,100	35,100	35,100	7,038	20.1%
4	인심돌봄복지과	고독사 유품정리 사업	250,000	250,000	250,000	125,000	50.0%
5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9,821,262	9,821,262	10,358,262	2,883,375	27.8%
6		노인지원주택 운영	936,403	936,403	936,403	275,054	29.4%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최종예산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7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67,200	67,200	45,200	16,673	36.9%
8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1,425,000	1,522,000	1,822,000	600,000	32.9%
9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574,300	574,300	574,300	156,200	27.2%
10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휴일수당 지원	0	0	1,421,930	329,031	23.1%
11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보건복지부)	0	430,800	430,800	215,400	50.0%
12		전출금(장애인이용 및 수용시설 수도요금 감면)	63,034	63,034	63,034	14,907	23.6%
13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애인 도예전수 알자리 창출	0	100,000	100,000	100,000	100.0%
14	자립지원과	전출금(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7,301,466	7,301,466	7,301,466	4,247,344	58.2%
15	자활지원과	노숙인 등 의료지원	4,677,303	4,677,303	4,677,303	2,113,795	45.2%
16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609,500	609,500	609,500	145,412	23.9%

1) 고독사 유품정리 사업

- 고독사 유품정리 사업은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고독사발생 가구를 대상으로 특수청소, 유품정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일정한 시간'에 대한 법률상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시신이 부패될 정도로 상당기간 방치된 후 발견된 것을 의미하며, 서울·부산의 경우 자체기준(3일)을 적용하고 있음.

- 23년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고독사 발생건수는 매년 전체 사망자의 약 1% 내외 수준으로, 17년 2,412명에서 21년 3,378명까지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최근 5년간 고독사 추이⁷⁾

- 특히 동 조사에 따르면, '21년 서울시의 고독사 사망자 수는 619명(전체 사망자 대비 1.3%)로 고독사 수가 경기(713명)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점차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현상을 반영해 유품정리업체, 특수청소업체 등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해당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되었고, 집행기관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식 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해당 사업의 결산 결과, 전체 예산 2억5천만원 가운데 1억 2천 5백만원만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집행률 50%) 구체적인 사업 방침 수립 과정에서 수요예측, 사업 추진방법 등에서 더욱 세심한 사업설계

7)보건복지부 (2023).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

가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 해당 사업은 고독사 인원 예측 곤란으로 자치구 당 고독사 발생현황을 일괄 반영하여 25개 자치구에 5백만원씩을 일괄배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고독사 유품정리 사업 추진 세부추진개요

- 수행주체 : 자치구
- 사업기간 : '22.4월~12월
- 지원대상 : 고독사 발생 가구
- 지원내용 : 특수청소(혈흔·냄새 제거, 소독 등), 유품정리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고독사 발생 가구당 최대 100만원
 - 지원방법 : 특수청소 업체 등에 직접 예산 지원

고독사 발생	주택현황	특수청소 결정방법	예산지원 방법
①무연고자	自家 소유	자치구 자체 판단 결정	특수청소 업체 등 계좌 이체 (유가족, 집주인 직접 지원 금지, 단, 자원봉사자 등이 특수청소 시 인건비·청소용품 구입 등 지원 가능)
	自家 아님	집주인과 상의 후 결정	
②연고자	自家 소유	유가족 등과 상의 후 결정	
	自家 아님	집주인, 유가족 등과 상의 후 결정	

- 사업 추진 결과 총 10개 자치구에서 18가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이 집행한 자치구는 강북구(480만원, 교부액의 96% 집행)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 1건도 집행하지 않은 자치구가 전체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로 나타나고 있음.

<표> 고독사 유품정리 사업 자치구별 집행 결과

집행률	해당 자치구
90% 이상 (1개)	강북구(96%)
80% 이상 (1개)	노원구(80%)
20% 이상 (5개)	중랑구(40%), 금천, 관악, 서초, 종로구 (20%)
10% 이상 (2개)	은평구(19.8%), 서대문구(13.6%)
5%이상 (1개)	동대문구(6%)
미집행 (15개)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의 실적저조 사유를 고독사 발생요건 충족의 어려움, 유족 동의, 임대인과의 협의 저조 등으로 분석하고 있음.
- 최근 고독사가 증가하는 추세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사업 수립 전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과정을 통한 면밀한 사업설계, 추진과정에서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한 신청기준의 완화, 홍보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출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함.
- 정부에서 발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고독사 관련 사후지원의 일환으로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하여 고독사 현장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처리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검토가 추진 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기도 함.

- 고독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향후 관련 유사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집행기관에서는 22년 해당 사업의 실적 저조로 23년도에는 해당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참여 자치구 가운데 강북구는 9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음.

2) 장애인 도예전수 일자리 창출

- ‘장애인 도예전수 일자리 사업’은 도예에 소질이 있거나 흥미가 있는 장애인 대상으로 도예 체험·교육을 통해 도예 전문가를 양성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 기 간 : 2022. 7월 ~ 12월(6개월)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서울시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40명
- 내 용 : 도예 체험·교육 운영을 통한 장애인 도예가 양성 및 취업연계
- 방 법 :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 선정 후 운영(도예 체험·교육)
- 예산 : 100,000천원(전액시비)

- 본 사업은 2022년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예산을 불용하였음.
- 한편, 2021년도에는 장애인 도예전수 일자리 사업을 예산 5,000만원으로 수행기관 사)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참여자 2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음.

〈표〉 2021년 장애인 도예전수 일자리 사업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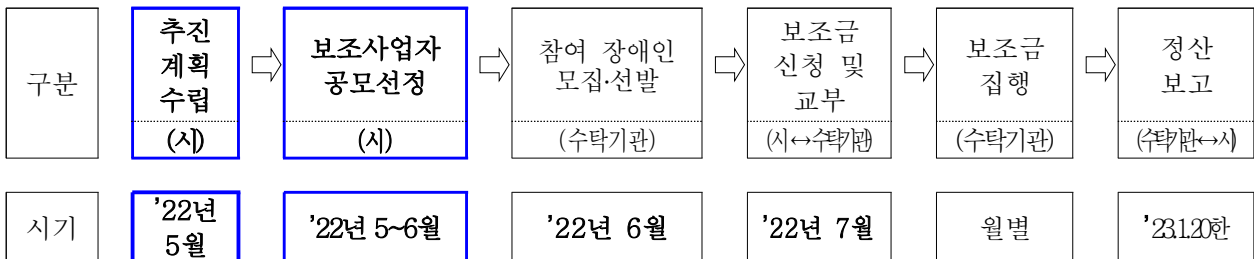
(단위: 명, 회, 천원)

계획				실적(2021. 6월~11월)					
참여자	교육횟수	전시회	사업비	참여자	교육횟수	전시회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20	32 (2개반16회)	1	50,000	20	32 (2개반16회)	1	50,000	47,861 (95.7%)	2,139

* 사업기간 : 2021.6월~11월(6개월)

- 집행부서는 불용의 사유로 일자리 수행기관을 공고(4회, '22.5~8월) 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전문성 있는 수행기관 선정이 어려워 사업 수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전액 예산을 불용하였음.

〈표〉 장애인 도예전수 일자리 사업 추진절차



- 추경예산 미집행은 예산편성의 신뢰성을 저해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사업결과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진행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임.
-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므로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불가피한 사안이 예상되면 감액추경을 통해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향후 예산편성단계부터 보다 철저한 수요조사, 타당성 분석 등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준비로 기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 노숙인 등 의료지원

- 해당 사업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⁸⁾에 근거하여 거리노숙인, 노숙인시설 입소인, 쪽방 주민 등 노숙인을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 무료진료소 운영, 결핵 검진 등의 의료지원 사업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해당 사업은 '22년도 전체 예산 46억 7천 7백만원 가운데 21억 1천3백만원 (45.2%)를 불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2년 노숙인 의료지원서비스 인원은 44,731명으로 전년도 대비 9,597명(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무료진료소 이용(754명 증가), 독감 예방접종(317명)은 늘어났으나, 병·의원 진료(9,867명 감소)와 결핵검진 이용자 수(801명 감소)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노숙인 수의 지속적 감소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및 무료진료소 이용감소를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음.
- 해당사업의 최근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년도부터 집행률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처치와 수술 등을 필요로 하는 노숙인 등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정기준 등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표> 노숙인 등 의료지원 사업 2019~2021년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
2019	5,060,404	5,060,404	4,927,729 (97.4%)	132,675
2020	5,152,969	5,032,969	4,388,047 (87.2%)	644,922
2021	5,214,563	5,214,563	3,161,459 (60.6%)	2,053,104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1년도 노숙인 등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노숙인들은 열악한 건강실태 및 의료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 특히 거리노숙인의 경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등 코로나-19 감염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⁹⁾
- 2022년 서울시 노숙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숙인의 72.9%는 신체질환이 1개 이상 있으며, 정신질환이 1개 이상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통계를 보면, 노숙인들에게 적절한 의료지원은 필수적인 지원으로 사료됨.
- 본 사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현상에 의해 집행률이 낮아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집행률이 낮아지는 폭이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사업 결과에 기재되어야 하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 방향 개편 등도 고려해볼 측면이 있다 하겠음.

9) 이태진 외(2021).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바. 예비비 사용

- 예비비 제도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43조10)에서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복지정책실에서는 22년도에 예비비로 총 10건, 49억 3천1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022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 천원)

연번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예비비지출사유
	조 직	세부사업	통 계 목			
1	복지정책과	이태원 사고 장례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50,000	413,350	'22. 10. 29.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2	안심돌봄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자치단체자본보조	579,000	578,527	집중호우 피해 사회복지시설 복구 지원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70,000	69,624	집중호우 피해 사회복지시설 복구 지원
4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25,383	3,125,38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를 위한 예비비 사용
5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참여자 임금 지급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12,308	12,308	2020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 10)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번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예비비지출유 사 출 유
	조 직	세부사업	통 계 목			
6		장애인자립 생활지원센 터 운영	민간자본사업 보조	28,300	24,000	집중호우 피해 사회복지시설 지원
7		발달장애 사회적응지 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비	4,000	3,339	
8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 보조	62,000	62,000	
9		장애인복지 관 기능보강	민간위탁사업 비	537,000	537,000	
10		장애인 주간보호시 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 보조	63,000	55,511	

- 복지정책실 예비비의 주된 사용 목적은 수해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복구 지원으로, 복지시설 총 16개소를 대상으로 침수, 누수, 외벽붕괴 등 수해피해 복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지역은 1시간 최대 강우량이 141.5mm까지 관측되었으며, 기록적 폭우로 서울의 역대 최고 강우량을 경신하였으며, 특히 노면수 집중에 따른 저지대 지하공간 침수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¹¹⁾
- 수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사용 과정에서는 재난상황임을 고려해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고, 구비를 매칭하는 일반 기능보강사업과는 달리 시비 100% 지원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복지시설 사전 점검을 통해 누수 등 피해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시설점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11) 서울연구원(2022), “2022년 8월 집중호우, 서울시의 강우량과 피해특성은?”. 서울인포그래픽스(334)

<표> 수해 피해 복지시설 복구관련 예비비 사용 현황

구분	지역주민 시설	장애인 시설				
	종합사회복지관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복지관	보호작업장	기타
16개소	7개소	1개소	2개소	2개소	1개소	3개소
1,343 백만원	579백만원	70백만원	63백만원	537백만원	62백만원	32백만원

3 기금 운영 관련

가. 기금운용 결산 총괄 및 기금운영에 대한 검토 의견

- 복지정책실에서는 사회복지기금 3개 계정(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과 재난관리기금 1개 계정(구호계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22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737억 8천 7백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439억 3천7백만원)보다 298억 5천만원 증가한 것임.

<표> 2022년도 복지정책실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22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계	143,937	29,850	747,436	717,586	173,787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2,827	△353	451	804	12,474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4,184	△202	2,824	3,026	23,982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7,828	478	1,265	787	8,306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99,098	29,927	742,896	712,969	129,025

- 기금은 그 운용에 있어서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고 집행해야 하는 일반예산과 달리 집행부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유연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반면 예산의 변경사용이 용이하여 예산집행에의 투명성과 목적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금의 목적사업이 여러 개인 관계로 정치적인 우선순위에 의하여 기금의 사용이 결정되는 등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함.
- 복지정책실 각 기금 계정의 22년도말 조성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22년도	2021년도	증 감	사유(상세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	전년도이월금	12,474	12,827	△353	
	예치금잔액	984	1,337	△353	당초계획 대비 집행잔액 감소 및 임대자금 융자금 미회수 발생
	예탁금잔액	11,490	11,490	0	
운용수입	합계	1,789	1,857	△68	
당해 연도 조성 ㉡	소 계	451	441	10	
	전입금	0	0	-	
	보조금	0	0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	
	예수금	0	0	-	
	이자수입	352	190	16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증대(이자율 상승)
	기타수입	99	251	△152	집행잔액, 반납금액 감소 (집행률 98.9%) 및 임대자금 융자금 미회수 (융자금회수 최대 6년까지 갹신 가능)

구분	주요항목	2022년도	2021년도	증 감	사유(상세히)
	예탁금원금회수	0	510	△510	2022년 예탁금원금 미회수
	예치금회수	1,337	905	432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액 조정
운용지출	합계	1,789	1,857	△68	
당해 연도 사용 ㉔	소 계	804	520	284	
	비용자성사업비(고유목적)	792	518	274	어르신 주거지원 (재계약 시 입차료 동결 등 소요비용 감소) 및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공모운영 사무관리비 감소) 추진 후 집행잔액 발생
	용자성사업비	10	0	10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 신규설치 수요 저조로 인한 임대용자금 미집행
	기본경비	2	2	-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	
	기타지출	0	0	-	
	예탁금	0	0	-	
	예치금	984	1,337	△353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조정
당해연도 현재액 ㉕+㉖-㉔	조성현재액	12,474	12,827	△353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984	1,337	△353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조정
	예탁금	11,490	11,490	0	

<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22년도	2021년도	증 감	사유(상세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	전년도이월금	24,184	24,248	△64	
	예치금잔액	9,784	9,848	△64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
	예탁금잔액	14,400	14,400	0	
운용수입	합계	12,608	12,764	△156	
당해 연도 조성 ㉡	소 계	2,824	2,916	△92	
	전입금	0	0	0	
	보조금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240	2,584	△344	전세 연장에 따른 융자금 회수 변동 (기본2년, 최장6년)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584	332	252	공금예금 이자율 변동
	기타수입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9,784	9,848	△64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변동
운용지출	합계	12,608	12,764		
당해 연도 사용 ㉢	소 계	3,026	2,980	46	
	비용자성사업비(고유목적)	700	681	19	잔액 집행
	용자성사업비	2,303	2,276	27	전세주택 계약건 변동
	기본경비	23	23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지출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9,582	9,784	△202	사업추진에 따른 예치금 감소
당해연도 현재액 ㉠+㉡-㉢	조성현재액	23,982	24,184	△202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9,582	9,784	△202	사업추진에 따른 예치금 감소
	예탁금	14,400	14,400	0	

<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22년도	2021년도	증 감	사유(상세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①	전년도이월금	7,828	7,642	186	
	예치금잔액	3,408	3,222	186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변동
	예탁금잔액	4,420	4,420	0	
운동수입	합계	4,673	4,180	493	
당해 연도 조성 ②	소 계	1,265	958	307	
	전입금	0	0	0	
	보조금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971	754	217	융자금 환수액 증가(추세) : 점포 2개소 40백만원 → 9개소 365백만원, 매입임대 31호 653백만원 → 32호 559백만원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222	112	110	'22.정기예금(6개월) 이율 (1.71%→3.72%) 및 예탁금 이율 (1.5%→2.99%) 인상
	기타수입	72	92	△20	서울광역자활센터 집행잔액 변동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3,408	3,222	186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변동
	운동지출	합계	4,673	4,180	493
당해 연도 사용 ③	소 계	787	772	15	
	비용자성사업비 (고유목적)	597	681	△84	서울광역자활센터 자활기금사업 예산 감소
	융자성사업비	187	90	97	'22년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신청 홍보 결과 6개소 187백만원 신청 실지원으로 증가
	기본경비	3	1	2	'22년 자활기금심의위원 수당 1,650천원, 기타 경비 등 1,338천원 실집행으로 증가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지출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3,886	3,408	478	사업추진에 따른 예치금 증가
당해연도 현재액 ①+②-③	조성현재액	8,306	7,828	478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3,886	3,408	478	사업추진에 따른 예치금 증가
	예탁금	4,420	4,420	0	

<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22년도	2021년도	증 감	사유(상세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	전년도이월금	99,098	52,013	47,085	
	예치금잔액	99,098	52,013	47,085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추가편성
	예탁금잔액	0	0	0	
운용수입	합계	841,994	322,409	519,585	
당해 연도 조성 ㉡	소 계	742,896	270,396	472,500	
	전입금	317,597	131,014	186,583	코로나19 및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추가편성
	보조금	411,814	109,035	302,779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집중호우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이태원참사 생활안정지원금 교부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2,064	946	1,118	공금예금이자수입 및 보조금 집행잔액의 발생이자수입
	기타수입	11,421	29,401	△17,980	민간시설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99,098	52,013	47,085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이월금 반영
운용지출	합계	841,994	322,409	519,585	
당해 연도 사용 ㉢	소 계	712,969	223,311	489,658	
	비용자성사업비(고유목적)	711,691	223,311	488,380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방역물품 지원, 집중호우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이태원사고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출 증가

구분	주요항목	2022년도	2021년도	증 감	사유(상세히)
	융자성사업비	0	0	0	
	기본경비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지출	1,278	0	1,278	국고보조금반환금
	예탁금	0	0	0	
	예치금	129,025	99,098	29,927	전년도 예치금회수 및 기타회계전입금 증가 등 수입 증가
당해연도 현재액 Ⓐ+Ⓑ-Ⓒ	조성현재액	129,025	99,098	29,927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129,025	99,098	29,927	전년도 예치금회수 및 기타회계전입금 증가 등 수입 증가
	예탁금	0	0	0	

- 2022회계연도의 기금사업 중 고유목적사업은 22개로, 당초 지출계획 현액 7,886억 4천4백만원 중 7,137억 8천1백만원을 지출하고, 748억 6천3백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9.5%)이 미집행되었음.

<표> 복지정책실 22년도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집행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기 금	사업수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미집행액	미집행률	
합 계	22	788,644	713,781	-	74,863	9.5	
사회복지 기금	노인복지계정	9	801	792	-	9	1.1
	장애인복지계정	1	700	700	-	0	0
	자활계정	5	597	597	-	0	0
재난관리 기금	구호계정	7	786,546	711,692	-	74,854	9.5

나. 기금운영에 대한 검토 의견

-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의 경비는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기금의 경우에는 일정 시점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조성”과 1년간의 운영상황을 나타내는 “운영”으로 구분하고 있고, 기금운영 결과 사업비에서 발생된 불용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해당 기금의 사업비로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용액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둔감한 재정환경을 가지고 있음.
- 기금은 용자사업과 비용자사업으로 나뉘어서 운용하고 있는데, 22년도의 경우 용자사업은 3개 사업으로, 당초 지출계획현액 51억원의 50.9%인 26억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기금별 용자사업 집행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기금	사업 수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사회복지기금	계	3	5,100	2,500		2,600	50.9
	노인복지계정	1	100	10	-	90	90
	장애인복지계정	1	4,800	2,303	0	2,497	52
	자활계정	1	200	187	0	13	6.5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의 용자사업은 사업성이 높고 작업장 및 점포확보가 필요한 어르신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에게 사업당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나, 20년도와 21년도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중단으로 신규사업장 임대수요가 없어 미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2년도의 경우 계획 지원 10개소 중 단 1개소만을 지원하여 전체 예산 1억원 가운데 1천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장애인복지계정에서는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을 기금용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중 주거비로 인하여 기초생활이 곤란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세주택 보증금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이나, 22년도의 불용률도 52%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음.

<표>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및 용자사업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기금/사업명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10개)	901	802	-	99	11.0
1 어르신 정보화 교육	30	30	-	0	0
2 어르신 자원봉사	139	139	-	0	0

(단위 : 백만원, %)

기금/사업명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용률
3	경로효친 행사지원	14	14	-	0	0
4	어르신관련 학술대회 지원	30	30	-	0	0
5	어르신문화행사 지원	60	60	-	0	0
6	어르신 지도자육성	111	111	-	0	0
7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52	52	-	0	0
8	어르신 주거지원	56	52	-	4	7.1
9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310	305	-	5	1.6
10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100	10	-	90	90.0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2개)		5,500	3,003	-	2,497	45.4
1	장애인단체공모사업지원	700	700	-	0	0
2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4,800	2,303	-	2,497	52.0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6개)		797	784	-	13	1.6
1	자활종합경영지원사업	70	70	-	0	0
2	자활교육훈련	70	70	-	0	0
3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운영지원	346	346	-	0	0
4	자활유통활성화	50	50	-	0	0
5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61	61	-	0	0
6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	200	187	-	13	6.5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7개)		786,546	711,692	-	74,854	9.5
1	이재민 재해보상	136,403	114,775	-	21,628	15.9
2	의료 및 구호비 지원	32,759	32,122	-	637	1.9
3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4,760	4,413	-	347	7.3
4	생활지원비 지원	569,532	526,158	-	43,374	7.6
5	격리시설 운영 지원	1,340	1,339	-	1	0.1
6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16,392	8,106	-	8,286	50.5
7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	25,360	24,779	-	581	2.3

○ 복지정책실에서는 23년부터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의 비용자성 사업 가운데 일부¹²⁾를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할 계획에 있음.

12) 노인복지계정 : 어르신 관련 학술대회, 경로효친 행사지원, 어르신 지도자 육성, 어르신 문화행사 지원,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5개사업)
 장애인복지계정 : 장애인공모사업지원 (1개사업)

-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다르게 불용률에 대한 제약이 덜하다고 할 수 있으나, 어르신 사업자 임대자금 융자지원 및 장애인전세자금 지원 등 융자사업의 경우 '22년도의 낮은 집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예산의 미집행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이 선행하는 등 면밀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음.